「2014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음.

1. 제안이유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79,960천원으로서, 이중 5건에 616,4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	25,000	- 7. 26일 발생 - 피해내용 : 훈련장 휀스92m, 수목 17본	경제체육과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362,700	- 4개시군(태백,영월,평창,정선) 공동 헬기임차료	산림과
풍수해 보험사업	111,000	- 풍수해보험 수요증가(주택, 온실 가입자 부담금 60% 지원)	안전건설과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	53,700	AI차단 통제초소(1.27~5.30,장평)인건비, 급식비, 초소설치비, 운영자재구입 등	농업기술센터
평창대화통합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긴급대책 운영비	64,000	- 7.29일 발생 - 급수차량 임차료, 생수구입, 급식비 등	상하수도시업소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창군의 예비비 편성 내역을 보면,
 - 2014년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519억중 1.4%인 35억을,
 - 2015년도는 2,823억중 1.5%인 41억을 편성하여 예비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 2014년도 예비비집행은 5건에 6억이 지출되었으며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도 지적 하였듯이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지출 한 것은 부적절함에 따라 2016년 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예산지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